

2020년 제1회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
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0년 2월 13일
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(법률 제16057호, 2018.12.24.)
-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6884호, 2020.1.29.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9869호, 2019.6.18.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, 2019.12.26.)
-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(부산광역시 규칙 제3954호, 2018.6.14.)

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근무예정부서	임용등급	인원	비고
노동·지역경제(산업)	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	행정6급 (일반임기제)	1명	
법제(입법)	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	행정6급 (일반임기제)	1명	
예산·재정분석	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	행정6급 (일반임기제)	1명	
교통	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	시설6급 (일반임기제)	1명	재공고

* 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, 5년 이내 연장 가능 (사업 계속 시)

3. 임용분야 주요업무

임용분야	주요업무
노동·지역경제(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노동·지역경제(산업)분야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노동·지역경제(산업)분야 자치입법,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 지원
법제(입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조례 제정·개정시 적법성 검토 및 입안 지원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및 주요 정책사업의 법률적 검토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·분석 등
예산·재정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·분석의안의 비용추계 분석예산·재정관련 제도·정책 현안 분석공사·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재정 분석 등
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교통분야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교통분야 자치입법,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 지원

4. 응시 자격

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

<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분야별 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격요건
노동· 지역경제 (산업)	행정6급 (일반 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경력인정 범위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
법제 (입법)	행정6급 (일반 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경력인정 범위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 <p>▶ 우대사항 :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</p>
예산· 재정분석	행정6급 (일반 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경력인정 범위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
교통	시설6급 (일반 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관련학위 해당학과 : 교통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</p> <p>▶ 경력인정 범위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

*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
5. 시험 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
-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※ 5대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6. 보수 수준

구분	상한액	하한액	비고
6급(상당)	75,914천원	50,584천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7. 시험 일정(예정)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'20.2.13.(목)	'20.2.25.(화) ~2.27.(목)	서류전형	'20.3.2.(월)	시의회 2층 중회의실	'20.3.3.(화)
		면접시험	'20.3.10.(화) ~3.16.(월)	시의회 2층 중회의실	'20.3.17.(화)

※ 시험일, 면접장소,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수처 :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총무팀(2층)

다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※ 접수시간은 09:00~18:00(점심시간 제외)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

·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편소인에 한하여 유효함

(우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총무팀

· 우편 접수 시는 ‘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’와 ‘반신용 봉투’를 함께 우송
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‘등기용 우표 부착’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

9. 제출 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<별지 제1호 서식>

②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▶ 응시수수료 : 5급(상당) 10,000원, 6~7급(상당) 7,000원, 8~9급(상당) 5,000원

- 부산광역시 수입증지(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구입) 날인

-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‘우체국 통상환증서’로 대체

③ 이력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
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**증빙자료 반드시 첨부**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

④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
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1부

▶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
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
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▶ **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**
▶ **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**

- ▶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
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을 명시하여야 하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
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
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-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발급

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<별지 제6호 서식>

⑩ 증명사진 1매 : 3.5×4.5cm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
 - ▶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②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
- ③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
 - ▶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<자유서식>
 - ▶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
-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(A4 3매 이내)
- ⑤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1부 <별지 제7호 서식>
 - ▶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(학과)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

다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
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※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
-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※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10. 기타 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기 바람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- 응시자(서류전형결과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 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※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
 - ① 경력기간 ⇒ ② 자격증 유무 및 점수 순 ⇒ ③ 성과물 유무
-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
-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
-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(☎051-888-8312)로 문의 바람